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첨부서류

공 제 항 목		첨 부 서 류	발 급 처	비 고
인 적 공 제	부양가족 증명	주민등록표등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로 가족관계 확인 어려운 경우)		
	일시퇴거자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본인 작성	
		재학증명서(취학의 경우)	학교	
		요양증명서(요양의 경우)	요양기관	
		재직증명서(재직의 경우)	직장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상 형편)	본인 보관		
입양자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	시·군·구청 또는 입양기관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읍·면·동주민센터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군·구청		
인 적 공 제	장 애 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읍·면·동주민센터	
		상이자	국가보훈처	
		그 외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의료기관
주 택 차 입 금	금융회사 등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금융회사 등	국세청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주민센터	
	개인간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본인 작성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대주(貸主)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주민센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본인 보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보관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본인 보관			

공 제 항 목		첨 부 서 류	발 급 처	비 고
주 택 자 금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금융회사 등	국세청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주민센터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시.군.구청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등기소, 본인 보관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대환, 차환, 연장 시)	금융회사 등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금융회사 등 또는 본인 보관	국세청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중소기업중앙회	국세청
주 택 마 련 저 축	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금융회사 등 또는 본인 보관	국세청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주민센터	
투 자 조 합 출 자 공 제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본인 작성	
		출자(투자)확인서	투자조합관리자 등	
신 용 카 드 등 사 용 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본인 작성	
		신용카드 등 소득금액 확인서	카드회사	국세청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우리사주조합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증명서	금융회사 등	국세청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금융회사 등	국세청
연 금	퇴직연금계좌	연금납입확인서	연금계좌취급자	국세청
보 험 료	연금저축계좌	연금납입확인서	연금계좌취급자	국세청
보 험 료	보장성보험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보험사업자	국세청
의 료 비	의료비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본인 작성	
	의료기관·병원	계산서.영수증,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병의원, 약국	국세청
	안경(콘택트렌즈)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구입처	국세청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구입처	
	의료기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병의원	
			구입처	
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요양기관	국세청	
교 육 비	수업료, 등록금 등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기관	국세청
	취학전아동 학원비	교육비납입증명서	학원	
	교복구입비	교육비납입증명서	구입처	국세청
	학교 외 도서구입비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교육기관	
	장애인특수교육비	교육비납입증명서	사회복지시설 등	국세청
장애인 특수 교육시설 해당 입증 서류		사회복지시설 등		

공 제 항 목		첨 부 서 류	발 급 처	비 고
교 육 비	국외교육비	교육비납입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국외 교육기관	
		재학증명서		
		부양가족의 유학자격 입증 서류 (근로자가 국내 근무하는 경우)	교육기관 등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본인 작성	
		정치자금기부금 영수증	중앙선관위 또는 기부처	국세청
		기부금 영수증	기부처	국세청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미분양주택확인서 (근로자는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금융기관이 발행한 차입금이자 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외국인근로자 세액감면	외국인 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 서	본인 작성		
월세액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본인 작성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주민센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본인 보관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본인 보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감면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세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본인 작성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표등본에 같음)	출입국관리사무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국내 주민등록 없는 재외국민)	재외공관		

가) ※ 「비고」란에 ‘국세청’으로 표시된 항목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제공(영수
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화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해야 함)

나) ※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은 1장만 제출할 수 있음

다) ※ 동일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증명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
음

라) ※ 인터넷을 이용한 첨부서류 발급

마) . 주민등록표등본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바) . 건물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사)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reic.org/realtyprice)

아) . 가족관계등록부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요건표

구 분	공 제 요 건				비 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	동거 요건			
			주민등록 동거	일시퇴거 허용		
기 본 공 제	본 인	×	×	×		
	배 우 자	×	○	×		
	직계존속	60세 이상	○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1954.12.31. 이전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	×	1994. 1. 1. 이후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	×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	○	○	1954.12.31. 이전 1994. 1. 1.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	○	
	위탁아동	18세 미만	○			1997. 1. 1. 이후
추 가 공 제	장 애 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1944.12.31. 이전	
	부 녀 자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없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한 부 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직계비속·입양자(20세 이하)가 있는자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 나이요건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구 분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비 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특 별 소 공 제	보 험 료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본인만 가능	
그 밖 의 소 공 제	개인연금저축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주택마련저축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	○	○	형제자매 제외
자녀세액공제		○	○	×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 손자녀는 제외)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세액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특 세 공 제	보장성보험료	○	○	○	
	의 료 비	×	×	○	
	교 육 비	×	○	○	직계존속 제외 *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가능
	기 부 금	○	○	×	기본공제대상자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연 12만원) 적용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연간 근로소득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다만, 일용근로소득 제외)
 ※ 연간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함

34. (-)비과세소득

- ▶ 실비변상적 급여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
- ▶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
-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연 240만원 이내)
- ▶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 ▶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원 이내)
-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 등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은 의료비세액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시 활용

70.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은 기부금·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소득공제 한도 적용 시 활용

71. (-)인적공제

- ▶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20세 이하 60세 이상	18세 미만	제한없음

-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요건	경로우대(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79. (-)연금보험료공제

-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근로자 부담금 : 전액 공제

80. (-)특별소득공제

-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공제
-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 500만원(1,500만원) 한도, 2011. 12. 31. 이전 차입분 증전 한도 적용
 - ※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는 합하여 연 500만원(고정금리상식과 비거치식원리금 포함상환방식 1,500만원)한도

94. (-)그 밖의 소득공제

- ▶ 개인연금저축 : 2000.12.31.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연 72만원 한도)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 (연 300만원 한도)
- ▶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 (벤처기업에 직접투자 5천만원 이하 50%, 초과 30%) 공제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다만 2013년 이전 투자분은 종합소득금액의 40% 한도)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의 경우 30%, 2014년 하반기 직불카드 등 사용분 증가액 10% 추가)를 소득공제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한도, 다만,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
-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400만원 한도)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

-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연 1,000만원 한도)
- ▶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 목돈 안드는 전세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40%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연 240만원 한도)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

(×) 기본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기본세율 (속산표)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과세표준 ×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과세표준 ×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과세표준 ×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과세표준 × 35%) -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과세표준 × 38%) - 1,940만원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114.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사람, 등록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50%(100%) 감면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공제 (66만원, 63만원, 50만원 한도)
-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 ▶ 연금계좌세액공제 :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연 400만원 한도)의 12% 세액공제
-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2%)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의료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5%)
 -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연 700만원 공제대상 한도.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음
 - ※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 공제대상에서 제외
 - 교육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5%)
 - 근로자 본인을 위해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전액 공제대상
 -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교육기관(대학원 제외)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 제한 없음, 직계존속 포함)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대상
 - 기부금 세액공제 : 유형별 공제한도 이내에서 기부금액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유형	세액공제 등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이월공제
		10만원 이하	100/110	
① 정치자금기부금	근로소득금액	10만원 초과	15%, 25%	-
②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①)	3천만원 이하	15%, 초과 25%	5년
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①-②) × 30%	소득공제 대상		-
④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①-②-③) × 10%	법정기부금과 합하여		5년
⑤ 지정기부금(비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①-②-③) × 30%	3천만원 이하	15%, 초과 25%	5년

-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및 비종교단체 포함)은 근로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2만원을 세액공제
 - ▶ 납세조합공제 :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95.11.1. ~ '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
 - ▶ 외국납부세액공제 :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 월세세액공제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금액)

(-) 기납부세액

- ▶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이용시 유의사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소득자는 영수증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알고
이용하세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① 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인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총족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②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꼭 필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 불가능합니다.

③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합니다.

④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 필요

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19세 미만(1996.1.1. 이후)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동의신청은 연중상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277 참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 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 부터 1월 20일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시거나, 홈페이지(납세자코너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또는 간소화 상담전화(국번없이 126-7)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 08:00 ~ 17:00)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는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확인하여 자료제출을 재차 요청합니다.
- 의료기관이 자료를 추가제출 할 경우 1월 21일까지 일부 세액공제 자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1월 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 불편하시더라도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영수증 발급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개별 안내 예정임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내 용	접근 경로
공통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연말정산관련 질의회신 및 판례 조회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taxinfo.nts.go.kr)
		○ 인터넷 상담 및 회신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
근로자	소득공제 자료조회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연말정산간소화(www.yesone.go.kr) [안내] ☎126 - 내선 7번
		○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조회	현금영수증(www.taxesave.go.kr) [안내] ☎126 - 내선 2번
	신고결과 조회	○ 과거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조회 * '09 ~ '13년 귀속분 조회 가능 '14년 귀속분은 '15년 5월부터 조회 가능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조회	홈택스(www.hometax.go.kr) [안내] ☎126 - 내선 4번
	안내책자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책자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해설」 책자 및 동영상 ○ 「연말정산 표준 상담사례」 책자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프로그램	○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 소득·세액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원천징수 의무자 (회사 등)	전자신고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환급신청 ○ 원천세 전자신고 설명서 ○ 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사용자 설명서 ○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사용자 설명서 ○ 연말정산 홈택스 자주묻는 질문	홈택스(www.hometax.go.kr) [안내] ☎126 - 내선 4번
	안내책자	○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프로그램	○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